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638
------------	------

2020년 9월 7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7. 6. 김상훈 의원 발의
- 회부일자 : 2020. 7. 8.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20.9.7. 상정·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상훈 의원)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소연료공급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광고물의 표시방법 (안 제2조제2항제8호)
- 4층 이상 15층 이하의 벽면에 설치하는 간판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구분(안 제4조제1항)
- 입간판을 제작할 수 있는 재료를 정함 (안 제9조의2제1항)
-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안 제10조제1항)
-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에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 (안 제10조제1항)
- 가로등에 설치하는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안 제11조제5항)
-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허가·신고 수수료 규정 정비(안 제27조제3항)

Ⅲ. 검토보고의 요지(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교통정보안내판 광고물 규정을 보완하고, 공공 목적의 광고에 한해 보도 바닥에 조명 광고를 허용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교통정보안내판 광고물 규정 보완(안 제10조제1항제2호)”

- 법령 및 조례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에서 교통정보안내판 광고물 허용 사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해당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 보관대, <u>교통정보안내판</u>, 횡단보도 쉼터, 가로영상문화시설(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한다)</p>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1)</p> <p>-----</p> <p>-----.</p> <p>2. ----- <u>교통정보안내판(영 제29조제3항 제6호 광고물은 제외)</u>, -----</p> <p>-----</p> <p>-----</p>

-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승강장(버스, 택시) 등의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되, 안전문화·재난상황 등을 알리는 재난문자전광판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검토보고서 붙임1).
- 이 조례에서 교통정보안내판은 ‘교통소통 정보 제공’을 염두에 두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지정되었으나, 서울시에 설치된 교통정보안내판 중에는 사망·부상 등의 안전문화·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어,

1) 시행령 개정('19.4.)에 따라 인용조항 정비(검토보고서 붙임2)



<안전문화·재난상황 정보 제공>



<교통소통 정보 제공>

이 개정조례안은 교통소통 정보만 제공할 때 광고물을 표시토록 하여 시행령에 위배될 수 있는 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교통정보안내판은 서울시(341개)²⁾ 및 서울지방경찰청이(21개)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광고대행사를 선정하여 안전문화·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업 광고를 운영하고 있어³⁾, 이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지방경찰청이 후속 조치를(교통정보안내판 존속 여부 등) 해야 할 것임.
- 다만, 이 개정조례안에서 허가기간 동안은 종전 규정에 따라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였고(안 부칙 제2조) 교통정보안내판의 광고물 표시기간이 올해 연장되어 ‘22년까지 운영될 수 있으므로⁴⁾ 서울지방경찰청과 광고대행사 간의 협의 및 후속조치 시행에 기간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

“도로 바닥에 조명표시 허용(안 제10조제1항제4의2호 신설, 제20조제1항)”

2)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설치·운영하고, 광고 없이 교통소통 정보만 제공하고 있음
 3) 선정된 광고대행사가 교통정보안내판 설치 및 운영비를 부담하는 대신, 일반상업광고를 운영(검토보고서 붙임3)
 4) 1988년 최초설치 후 매 3년마다 표시기간 연장(2020~2022)

- 현행 제도에서 도로 바닥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는 장소이나⁵⁾, 이 개정조례안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보도를 추가하여 공공 목적의 광고는 보도 바닥에 조명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집행부는 보차혼용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도 보도와 더불어 바닥 조명 광고를 허용코자 하는 의견을 제시함⁶⁾.

현행	개정안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u><신설></u></p>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 -----.</p> <p><u>4의2.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에 제3조의2에 따른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하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u></p>

- 5) 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 가.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이 조례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의 바닥
- 6) 도로교통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0. "보도"(歩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p>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4. <u>도로(보도를 포함한다)의 바닥</u></p>	<p><u>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방법·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u></p> <p>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① ----- ----- -----.</p> <p>4. 「<u>도로교통법</u>」 제2조제1호에 <u>따</u> <u>른 도로의 바닥(제10조제1항제4</u> <u>의2에 따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u> <u>물은 제외한다)</u></p>
--	--

- 바닥 조명 광고는 레이저로 각인한 이미지를 LED 조명을 통해 바닥에 비추는 방식으로, 간판 등 다른 옥외광고물에 비해 설치가 쉽고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은 있으나, 광원에 눈이 직접 노출되는 빛공해 문제를⁷⁾ 비롯해, 시시각각 변하는 시각적 자극으로 보행자의 통행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어린이는 시각적 자극에 멈춰서거나 따라가는 행태가 있어 보행 안전성에 문제가 클 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현행 제도에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바닥 조명의 상업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목적이라고는 하나 바닥 조명 허용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

7) 바닥조명광고는 광원이 보행자에게 직접 노출되어(바닥조명광고를 쏘는 레이저 빔프로젝터를 올려다보면 광원에 눈이 직접 노출) 빛공해 및 시력 안전 문제 발생 가능
* 주로 업소 간판 옆이나 윗부분에 조명을 프로젝트를 설치하여 도로 바닥에 조명을 비춤



- 따라서, 바닥 조명 광고 허용에 관해서는, 통행의 안전성 및 빛공해 안전성 등이 충분히 숙고된 후 공공목적의 바닥 조명 광고의 표시 장소와 방법, 광원의 설치기준 등을 함께 조례 입법하거나, 이 개정조례안에서 재량규정으로 제시된 ‘바닥 조명 광고의 세부 기준 마련’을 의무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차도와 구분되는 보도 외에 보차혼용이 많은 이면도로에도 바닥 조명 광고가 사용된다면⁸⁾, 보행자 안전은 물론, 보행자의 예측불가능한 동작으로⁹⁾ 차량 운행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바닥 조명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장소는 특히 세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현재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도로 바닥 조명 광고의 현황 파악(검토보고서 붙임4) 및 대책 마련도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음.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제2항제8호, 제4조제1항제2호, 제11조)”

- 시행령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의 광고물이 벽면 이용 간판에 추가된 사항과

8) 집행부는 보차혼용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에도 바닥 조명 광고 허용 의견을 제시함

9) 특히, 어린이가 바닥 조명 광고에 멈춰서거나 따라가는 행태

‘현수식’이 ‘매다는 방식’으로 용어 정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가로 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이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벽면 이용 간판 중, 차양면(캐노피)이 설치되는 주유소·가스충전소는 차양면에 표시하거나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를 허용하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벽면 이용 간판에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충전시설이 추가된 시행령 개정사항을(검토보고서 붙임5) 반영하여, 주유소·가스충전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충전시설에도 광고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유사시설의 광고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현행	개정안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② (본문 생략) <u>8.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측면 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u>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② (현행과 같음) <u>8. 주유소, 가스충전소, 영 제3조 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차양면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 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간판 2개 이내</u>

참고로, ‘19년 말 기준 서울시에는 수소가스충전소가 3개소 설치되어 있음¹⁰⁾.

10) ‘20년에 강동 수소가스충전소 신규 설치

※ 수소가스 충전소 현황 (자료: 도시빛정책과)

- 수소차량 보급현황 : 전국 5,097대, 서울 683대 ('19년 12월말기준)
- 전국 충전소 운영현황: 31개소(상업용 29, 연구용 2)

전국	계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 전남	경남	부산	대전 충청	대구 경북
개소	31	3	5	1	6	3	5	2	4	2

○ 서울 충전소 현황

구 분	위 치	방 식	운 영	준공	운영 시간	충전능력	안전 관리자
상암 충전소	마포 구	자체수소생산 (매립지 메탄 정제)	서울시	'10. 9.	24시간	30대/일 (6kg/대,350기압)	4명
양재 충전소	서초 구	튜브트레일러 공급	현대 자동차	'10. 3.	8시~21시	50대/일 (6kg/대,700기압)	2명
국회 충전소	영등포 구	튜브트레일러공급	현대 자동차	'19. 8.	8시~22시	50대/14시간 (3.3Nm ³ /h,700기압)	1명

- 한편,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은 종전 시행령 해당 규정을 이 조례에 반영함으로써(검토보고서 붙임6) 특이사항 없음.

“기 타(안 제4조제1항제8호, 제9조의2제1항제6호, 제27조제3항)”

-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 이용 간판은 자치구 옥외광고물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입간판 재료를 비철금속으로¹¹⁾ 규정하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에 수수료를 반환토록 하는 것임.
- 이 조례에서,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30m² 이상은 시심의를 받도록 하고 10m² 이상은 구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¹²⁾, 건

11) 아크릴, 목재, 천종류 등

12)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 4층 이상 15층 이하의 벽면에 설치하는 간판은 면적이 225 m² 이하의 대형 간판으로서 대부분 서울시 심의대상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벽면 이용 간판의 구심의와 관련된 조항에 사실상 서울시 심의대상이(이 조례 제4조제1항제4호)¹³⁾ 포함되어 있어, 이 개정조례안은 해당 사항을 삭제하여 서울시 심의사항과 자치구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현 행	개 정 안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 ----- -----.

1.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 가.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센티미터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한다)
- 나.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 광고물(규격확대, 위치·장소 변경, 사용 자재변경을 포함한다)
- 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라. 법 제3조의2 및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2.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표시기간 연장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옥상간판 또는 타사광고
- 나. 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
- 다.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 라. 그 밖에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13)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4.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하나의 간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가.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하이고,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p>8.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크기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크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서 생략)</p>	<p>8. ----- --- 제2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 ----- ----- ----- ----- ----- ----- ----- ----- ----- ----- -----</p> <p>(현행과 같음)</p>
--	---

“중 합”

- 이 개정조례안은 주로 시행령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바닥 조명 광고에 관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V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1638
----------	------

제안일자 : 2020. 9. 7.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도로 바닥 조명 광고의 세부기준 마련을 의무화함

2. 수정 주요내용

-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도로 바닥에 공공 목적의 조명 광고를 허용하되, 그 표시방법·장소·기간 및 광원 설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하도록 함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1항제5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고,

안 제10조제1항제4의2호를 같은 항 제5호로 하여, 본문 중 “「도로
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0
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도로”로, “보도”를 “도로”로, “심의를”을
“자문을”으로 하고, “표시방법·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를 “표시방법·장소·기간 및 광원 설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로 한다.

안 제20조제1항제4호 중 “제10조제1항제4의2에”를 “제10조제1항
제5호에”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신 설></p>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 ----- ----- -----.</p> <p>4의2.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에 제3조의2에 따른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하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방법·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p>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 ----- -----.</p> <p>5.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도로 -- ----- ----- ----- 도로 ----- ----- ----- ----- 자문을 ----- ----- ----- 표 시 방법·장소·기간 및 광원 설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p>

<p>5. (생략)</p> <p>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p> <p>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4. <u>도로(보도를 포함한다)의 바닥</u></p>	<p><u>할 수 있다.</u></p> <p>5. (현행과 같음)</p> <p>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p> <p>① ----- ----- ----- -----.</p> <p>4. 「<u>도로교통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u>도로의 바닥(제10조제1항제4의2에 따른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은 제외한다)</u></p>	<p><u>준을 정해야 한다.</u></p> <p>6. (현행과 같음)</p> <p>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p> <p>① ----- ----- ----- -----.</p> <p>4. ----- ----- -----<u>제10조</u> <u>제1항제5호에</u> ----- ----- -----</p>
---	---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유소, 가스충전소,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차양면의 측면”을 “차양면”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현수식”을 “매다는 방식”으로 한다.

2.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명칭 등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양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3조제6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료”란 비철(非鐵)금속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제1호라목”을 “영 제17조제1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정보안내판”을 “교통정보안내판(영 제29조제3항제6호 광고물은 제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제3조의2에 따른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하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방법·장소·기간 및 광원 설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1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 제29조제5항 및 이 조 제5항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로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바닥(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제외한다)

제27조제3항 중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과오납한 경우 등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은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제6호·제7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p> <p>1. ~ 7. (생략)</p> <p>8. <u>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량면의 측면 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u></p> <p>9.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차</u></p>	<p>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주유소, 가스충전소, 영 제3조 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 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차량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u></p> <p>9.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 영 제3조</u></p>

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차양면의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에 가로크기는 차양면 가로 폭 이내여야 하며, 세로 크기는 제6호를 준용한다.

나.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 3.5제곱미터 이내, 두께는 2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 7. (생략)

8.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크기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크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의 폭을 초

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 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명칭 등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양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가. 차양면-----

-----.

나. ----- 매다는 방식-----

-----.

3. ~ 7. (현행과 같음)

8. -----
----- 제2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

-----.

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6호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생략)

② ~ ④ (생략)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 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 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 횡단보도 쉼터, 가로영상문화시설(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한다)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영 제3조제6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료”란 비철(非鐵)금속을 말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 목-----

-----.

1. (현행과 같음)

2. -----
- 교통정보안내판(영 제29조제3항제6호 광고물은 제외) -----

3.·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②·③ (생 략)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②
(생 략)

③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영 제29조제5항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설>

3.·4. (현행과 같음)

5.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또
는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제3조
의2에 따른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도로
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하며, 시장 또는 구
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
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
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
시방법·장소·기간 및 광원 설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
해야 한다.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2. (현행과 같음)

3. 영 제29조제5항 및 이 조 제5항
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
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 카목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생략)
- 4.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의 바닥

5.·6. (생략)

제27조(수수료) ①·② (생략)

③ 수수료는 허가신청·신고 시 또는 안전점검 신청 시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로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 4.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바닥(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은 제외한다)

5.·6. (현행과 같음)

제27조(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과오납한 경우 등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은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